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채유미, 이승미, 이은주, 이세열,
이광호, 김정환, 성흠제, 최기찬,
오한아, 이동현, 김종무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원인자부담금 '선납' 부과원칙 확대(안 제3조제4항)

나.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별표1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 도	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	
최소굴착면적	1.2m × 1.2m	1.2m × 1.2m	1.2m × 1.2m	
최소굴착폭	1.2m	1.2m	1.2m	
간접손계영향 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 ·굴착깊이가 2.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 ·굴착깊이가 2.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/5까지 범위 (굴착시 파일,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.3m씩 추가 가산) ·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.3m구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4m구간 ·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 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.25㎡ 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 장도로의 경우에 준한 다. ·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 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 류의 경우에 준한다. 	
복 구 비 용	직접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
	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스팔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씩 우기(두께 5cm) 비용 ·콘크리트포장도로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씩우기(5cm) 비용 ·아스팔트덧씩우기포장도로(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 팔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씩우기(5cm)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블록류.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표층 시공비 (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%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한다) ·화강석류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표층 시공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 공비 ·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 간의 덧씩우기(4cm) 비용
	강 독 업 무 비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	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
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</u></p> <p>2. <u>전기·가스·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</u></p> <p>3. <u>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별표 1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(생략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괴영향 구간 및 복구비용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생략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괴영향 구간			
복구 직접 간접			
비용 감독 업무비	도로굴착 면적(복구금액) × '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'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		

3.~4. (생략)

<별표 1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율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(현행과 같음)		
최소굴착폭			
간접손괴영향 구간			
복구 직접 간접			
비용 감독 업무비	도로복구금액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	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3.~4. (현행과 같음)